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3나12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1. 7 선고 2023나122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4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진현덕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변론 종결2024. 7. 25.

판결 선고2024. 11. 7.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4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1,346,5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 주식회사에 별지2 기재 채권 중 31,346,519원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중 4행의 각주 2)를 3행의 채권최고액 또는 청구금액란으로 옮기고, 5행 채권최고액 또는 청구금액란의 "27,000,000"을 "270,000,000"으로, 6행 등기일자란의 "2020. 3. 9."을 "2021. 3. 9."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406,641원 합계 6,698,481원을 배당받았다"를 "2,406,641원 합계 8,698,481원을 배당받았다."로 고친다.

2. 제척기간 도과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의 "증거는 없는바"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2021. 5. 11.에 이루어졌다(을 제13호증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2. 제척기간 도과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3. 본안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각주6)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 외에 B의 소극재산으로 위 소극재산 ②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일인 2021. 3. 9.까지의 이자 5,090,533원과 소극재산 ③ 채무에 대한 이자 554,794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2023. 8. 31.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7쪽 3행의 "인정"과 4행의 "할 수 있다"를 붙여 쓴다.

○ 제1심판결 7쪽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2020. 11.경 및 12.경 피고로부터 1,350,000,000원을 지급받아 마스크 기계 15대와 이에 관한 부설 시설 및 원부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B에 위 마스크 기계를 임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마스크 기계는 B가 피고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21. 3. 9. 무렵 B가 위 1,350,000,0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위 마스크 기계에 대한 사용·수익권 및 위 마스크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한 마스크 판매수익에 대한 기대이익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8쪽 19행의 "알 수 없었으므로"를 "알 수 없었으며, 2020. 11.경 B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B 측에서 이를 미루다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알 수 없었던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5행의 "임대료채권인 점 등"을 "임대료채권인 점, 피고가 2020. 11.경 B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B 측에서 이를 미루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마쳐져 있던 위 각 가압류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의 "406,641원"을 "2,406,641원"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철

판사김경선

판사기희광

별지